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0. 8.

여 성 가 족 부
(가 족 문 화 과)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안 제6조의2)
-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의 일반 건강검진에 따른다.

③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별표 2의2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3. 아이돌보미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별표 2의3의 지

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에 광역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제10조의4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전원의 교체

② 법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를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2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회신(정보통신망에 의한 회신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원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부과된 행정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3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제6조의3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수행인력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및 자료발간, 사업 매뉴얼 및 교육교재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나.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관리, 종사자 교육, 사업평가 지원 및 아이돌보미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이상) 다. 아이돌보미 자격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노무업무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 및 장비기준
시설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회의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등을 각 1개 이상 갖추는 것
장비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및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는 것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제6조4제2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지역내 아이돌봄 인력수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 기준
센터장	광역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수행인력	다음 각목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가.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 아이돌보미 채용·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나. 아이돌보미의 급여, 4대 사회보험 관리,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아이돌보미 급여·보험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다.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등 아이돌보미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라.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등 서비스기관을 지원하는 담당인력 마. 광역지원센터의 조직·예산·회계 등을 관리할 담당인력

2. 시설 및 장비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 및 장비기준
시설	지역내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회의실, 노무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각 1개 이상 갖출 것
장비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을 갖출 것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 제3항 관련)

구 분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 (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육아도우미로 활동 또는 육아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 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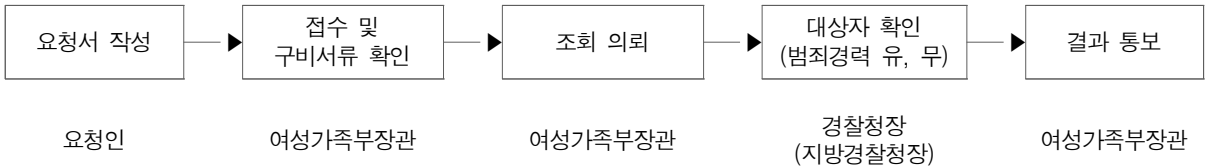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의 위반 범죄경력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 범죄경력
-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위반 범죄경력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위반 범죄경력
-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 및 제17조 각 호의 위반 범죄경력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위반 범죄경력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범죄경력 조회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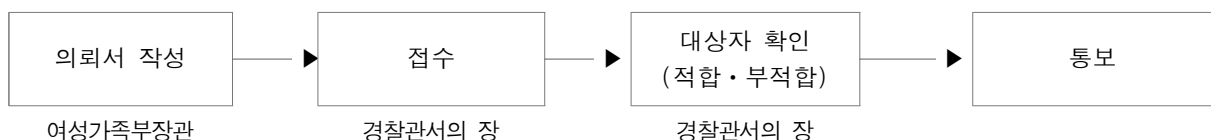
_____ 귀하
경찰서장

첨부서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 법 위반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마약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 대상 범죄경력

1. 아동대상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요청인 (대상자)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범죄경력 여부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마약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여부	[] 있음	[] 없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	[] 있음	[] 없음
	진단서 발급 날짜	년 월 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는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3.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의 일반건강검진에 따른다.</u> <u>③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신 설>

제6조의3(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별표 2의2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3. 아이돌보미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별표 2의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에 광역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제10조의4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전원의 교체

② 법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
----- 표준근로계약서-----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신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제9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② (생략)

제13조(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

-----.

제12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 제9조제3항제1호가목-----.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

-----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

② -----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

• 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2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회신(정보통신망에 의한 회신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원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